

독일판례 3

불법반입 표현대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정정보도 명령

쾰른 지방법원 1985. 12. 11 자 판결-280648/85 사건-

적용법조

서부독일방송에 관한 법률 제 9 조

판결요지

1.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화면 및 문자로서 구성된 텔레비전 보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텔레비전 시청자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그리하여, 위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문제로 된 텔레비전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사실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개요

신청인은 모포취급 상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84년 10월과 11월에 2개의 프랑스회사로부터 (그 중에서도 특히 Monaprim 회사로부터), *Felis tigrina*, *Felis geoffroy* 및 *Felis pardalis* 라는 볼리비아 원산지의 야생고양이 모피를 19,452 개 구입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볼리비아로부터 프랑스로 모피를 수출함에 있어서는 「워싱턴 종류보호협약」(국제적인 약어는 CITES 이다)에 따라서 Nr. 00290-00293의 반출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로 프랑스로의 수입을 위하여서는 관할

프랑스관청으로부터, 구주공동시장 규정 Nr.3626/82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프랑스의 관할관청은 1984년 10월 24일 및 11월 26일에 CITES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그 증명서에는 구주공동시장내에 적법하게 수입되었으며, 또한 워싱턴의 종류보호협정의 규정들이 준수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볼리비아로부터 프랑스로의 위 모피수입에 관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신청인은 위 모피를 프랑스에서 구입하여, 이를 독일로 수입하였던 것이다. 피신청인은 1985년 10월 20일 「Globus」라는 연속된 프로그램에서, 「종류보호」 그 중에서도 특히 얼룩고양이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위 프로그램에는 무엇보다도 모피업계의 대표자와 세계야생동물보호협회의 대표자(Niekisch)가 출연하여 이야기하였다. Niekisch 씨가 그의 견해를 밝히고, 이어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만이 나오는 가운데, 카메라는 업무문서 및 Monaprim 회사의 1984년 10월 29일자 계산서를 비추고 있었으며, 나중에 가서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가 화면을 꼭 채우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낭독되어졌다. 「위와 같은 문서들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의 가죽이, 볼리비아로부터 프랑스로, 다시 구주공동시장으로 들어 오게 되었다. 그러나 구주공동시장국가의 어느 한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구주공동시장의 모든 나라에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프랑크푸르트의 한 상인은 4만장의 얼룩고양이 가죽을 독일 내로 수입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송보도를 근거로 해서 신청인은 그의 정정보도문안을 방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방영해 줄 것을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은 그의 정정보도문을 방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르면, 그 사용된 개념의 성질상, 평균적인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위 모피들을 불법으로 특히 워싱턴의 종류보호협정을 위반하여 이를 수입하였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판결이유

가처분명령의 발부를 구하는 이 사건신청은 이유있다. 즉 서부독일방송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의 방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인이 그의 정정보도문의 방영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즉 형식 및 기간 등),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하등의 의문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측으로부터도 하등의 이의가 제기되지도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측의 견해와는 달리 정정보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위한 실제적인 요건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문제로 된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의견의 진술이라든가 또는 가치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위 「Globus」라는 프로그램의 얼룩고양이보호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청인이 그 모피를 수입한 사실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위 모피를 원산지인 볼리비아로부터 반출하여 프랑스로 수입하는 것 및 프랑스로부터 독일로 수입하는 것이 마치 불법인 것 같은 인상을 주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인상은 카메라의 설득력의 결과로서, 위 보도문안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히 카메라가 비친 영상적인 내용과 그 문안과의 상호연관성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위 프로에서 사회자가 먼저 서두를 꺼낸 이후에 바로 모피업계의 대표자 및 세계야생동물에호협회의 대표자(Niekisch)가 나와서 얼룩고양이 모피의 거래에 관련하여 위싱턴의 종류보호협약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중 위 Niekisch 씨는 이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다음의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즉, 첫째로, 그는 위 얼룩고양이가 아닌 다른 야생동물의 수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점을 이야기 하였고, 둘째로는, 모피 수입상들이 당연한 결과로서, 독일 내로 위 위협 받고 있는 고양이종류의 모피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길 내지는 편법을 찾고 있다고, 비판적인 각도에서 이를 언급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언급이 있는 직후, 독일 내로의 모피수입에 성공한 독일의 모피수입상에 대한 예로서 신청인의 성명이 지적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신청인은, 4 만장의 얼룩고양이의 모피를 독일 내로 「은밀하게 반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묘사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모피 상인들이 금지된 고양이 종류의 모피를 독일 내로 반입하는 데 성공하였던 그 「편법」이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한 점 및 신청인이 모피를 수입하는 행위를 「은밀하게 반입」하는 것으로 표현한 점들에 의하여,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평균적인 시청자들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가 얼룩고양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고있는 보호 규정들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위 규정들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밖에는 없도록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청인이 위 모피를 「은밀하게 반입」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즉 완전히 중립적이고 또한 가치 판단과는 무관계한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위와 같은 인상이 들게 하였던 것이다. 위 경우에 있어서 위 「은밀하게 반입」하였다는 용어가, 신청인이 「독일속어사전」에서 발췌하여 제출한 바와 같이 「어떠한 것을 밀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 또는 피신청인이 1977년 말 Duden 사전에서 발췌하여 제출한 바와 같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반입」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무런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취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관계 (즉 상품의 수입)에 비추어 보면, 「은밀하게 반입」하였다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독일 내에 들어오게 된 위 모피는, 관계기관을 거처지도 아니하고 즉 비밀로, 관계관청이 모르는 사이에 독일 내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시청자들의 이해에 의하면, 모피의 수입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유롭고 직접적인 모피의 수입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는 불법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반입이 불법적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여 준 것은, 신청인도 역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방송에서 신청인은 4 만장의 얼룩고양이 모피를 독일로 「은밀하게

반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었다. 신청인이 위법하게 모피를 수입하였다고 하는 인상은, 당원의 검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자가 납득할 원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와 동시에 카메라는(붙어로 쓰여진) CITES 증명서를 비추어 주고 있었고, 그 후에 바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쓰여진 계산서를 비추었으며, 또한 위 낭독된 원고의 내용에는 구주공동시장에 속하는 어느 한 나라에 존재하는 물건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구주공동시장의 모든 다른 나라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서류들」과 관련하여 CITES 증명서가 화면에 비추어 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호관계 특히 위 화면의 직후에 나타난 「은밀한 반입」이라는 단어에 의하여 야기된 불법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인상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증명서는 단시간 동안 짧게 방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이나 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모피의 수입이나 수출에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아 규정에 적합한 증명서라는 언급도 없이 방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이 없이는, 위문서의 의미 및 내용 특히 외국어로 쓰여진 증명서의 중요성이 평균적인 시청자들에 대하여 (더욱이 이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재판부의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역시) 이해되거나 인식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위 방송에 있어서, 구주공동시장에 가입한 어떤 나라안에 존재하는 물건은 아무런 제한없이 구주공동시장의 모든 나라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즉 신청인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는 점이 지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였다고 하는 인상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은, 위 방송에 있어서의 기타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모피가, 원산지인 볼리비아로부터 독일 내로 들어오기 위하여 거쳐야 할 여러 과정 중의 어느 한 과정에 대하여만 관계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바로 위 모피의 볼리비아로부터의 반출 및 프랑스로의 반입이 모두 적법한 것인지 또는 불법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볼리비아로부터의 수출 및 프랑스로의 수입에, 신청인이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위 방송에 있어서는 전혀 표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은 각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신청인이 위 모피를 독일 내로 반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인상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당 법원이 검증의 결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던 바와 같이, 신청인이 관련된 이 사건의 방영에 이어서 바로 다른 사건(즉 상아에 관한 보도)의 방영이 있었는 바, 이에 관하여는 강력한 수입의 금지 및 소비자들의 책임의식에 대한수 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아는 여전히 밀렵자나 기념품을 위한 사냥꾼들의 전리품으로 되어 오고 있다고 방영하여, 위 경우에도 역시 위법적인 행동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피의 수입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위법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는 인상이 위 방송프로에 의하여 주어졌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인상을 매개로 하여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주장이 행해진 것이고, 따라서 이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적으로」라는 개념은, 애당초부터 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사실상의 주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의견의 표시 또는 가치판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원 역시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위 개념을 사실상의 주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의견의 진술로 볼 것인지를 판가름함에 있어서는, 그 개념이 어떠한 상관관계 하에서 사용된 것인지 및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로써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는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모피의 수입과 관련한 신청인의 행동은 「불법적」인 것처럼 간접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한 타인에게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왜냐하면, 신청인의 경우에 있어서의 원고 및 화면의 묘사를 통하여, 모피의 수입은 얼룩고양이의 보호를 위한 현재의 보호 규정들 및 특히 워싱턴의 종류보호협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에서 「불법적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방식이라는 인상은 사실상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산지인 볼리비아로부터 프랑스에 모피를 수입하고, 또한 프랑스로부터 독일로 모피를 수입한 것이 현존하는 규정들 특히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에 부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신청인은 위 규정들에 전부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될 수 있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실상의 주장이 문제로 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정정보도문의 방영을 청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신청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